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제1종 보통 []제2종 신청서

※ 뒤쪽에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가 있으므로 질의내용을 확인 후 적어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본인의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안내 등 운전면허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에 []아니오 ※ 이-메일, 휴대전화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에서 변경등록하여야 제공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도로교통공단

신청인 제출서류	1. 운전면허증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2장 3.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4.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가. 신체검사서 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포함) 결과 통보서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로서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나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1.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시력에 관한 정보(신청인이 해당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신청인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수필증 첨부란	수수료	담당	부장	장장
	「도로교통법」 제139조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는 금액			

※ 응시원서 또는 적성검사서에 첨부된 사진위에 병원장의 직인과 담당의사의 실인을 겹쳐 날인하고 투명테이프를 부착바랍니다.